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937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내역 제출 신고 등(안도결의원안)	2

I. 개요

1. 안도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93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도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28.

(3) 회 부 일 : 2024. 10. 29.

나. 제안이유

가상자산 투자자 및 거래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나, 상속·증여시 세원관리를 위한 과세인프라가 미비해 가상자산이전 거래에 대한 정밀한 세원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다. 주요내용

가상자산이전 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부여 및 제출방법 등 규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관리되는 가상자산지갑 외의 가상자산지갑(개인지갑등)에 대한 정보(지갑주소, 보유내역)를 매년 신고하도록 함(안 제82조제8항, 제82조의2 및 제87조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내역 제출 신고 등(안도결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등 의 제출(제82조)	☐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u>< 신 설 ></u>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u>< 신 설 ></u>	☐ 가상자산 정보의 신고 등
	○ 신고의무자: 가상자산 보유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가상자산지갑’의 잔액(각 가상자산지갑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신고대상: 1.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지갑주소, 가상자산의 종류, 보유지갑 잔액의 최고금액 등 3. 명의자 및 실질 소유자 정보 ○ 신고 예외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통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상자산지갑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확인되는 가상자산지갑
<u>< 신 설 ></u>	☐ 신고 위반시 과태료(제87조 신설)
	○ 가상자산지갑정보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금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 안도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37)

□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 상속 및 증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가사자산 보유액이 일정 이상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해 가상자산 정보(보유자의 신원, 지갑주소, 가상자산 종류, 잔액, 실질 보유자 등)의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위반 시에는 미신고 금액 혹은 과소신고액의 20%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함.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의미함¹⁾.

가상자산 시장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6.0조원 수준이고 거래가능이용자가 778만명에 달하는 등 시장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적 특성으로 인해 자금 세탁, 역외 탈세 등 탈루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임.

한편, 2020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가상자산에 대한 평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폐·채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방법이 마련되어²⁾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시키고 있고, ‘증여재산’의 범위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인 가상 자산을 활용한 세 부담 없는 상속·증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특히,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가상 자산 거래(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탈루 혐의에 대한 단서 포착이나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가상자산 정보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과세 자료의 확보를 통하여 편법 상속 및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 제82조제8항³⁾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개정안은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입법례⁴⁾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대해 제출누락 등을 방지하고자 제출의무 대상자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하는 등 내용의 정부안⁵⁾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해당 안건 심의 경과에 따라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 제82조의2에 따른 거주자의 가상자산 보유 등 정보(보유자의 신원, 지갑주소, 가상자산 종류, 잔액, 명의자 및 실질 보유자 등)의 신고의무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상속·증여세는 매년 주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나 소득세와는 달리 피상속인의 사망 혹은 증여라는 원인행위가 있을 시에만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재산소유 현황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안)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개정안(정부제출, 의안번호2203526) 및 「소득세법」 개정안(정부제출, 의안번호 2203518)

정보를 해당 거주자에게 매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2027년도부터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적 정보교환이 개시되면 이를 통해 거주자의 역외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의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22년 8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재정위원회는 국가 간에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를 승인하였고, 같은 해 11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20개국(G20)이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현재 CARF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⁶⁾」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임.

문 의 처
02)6788-5161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24. 9. 2., 의안번호 3523)